

#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2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  
발 의 자 : 조상호, 권수정, 김경영,  
김경우, 김제리, 김화숙,  
노승재, 박기재, 이영실,  
이정인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지원사업 내용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,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.(안 제7조 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5호 중 “거주시설·주간활동·돌봄”을 “거주시설·돌봄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<u>거주시설·주간활동·돌봄</u> 지원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6. ~ 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 <u>거주시설·돌봄</u> ----- --</p> <p><u>5의2.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</u>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